##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30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김남희・이기헌・박상혁

김우영 • 민병덕 • 김영환

한민수 · 김영진 · 송옥주

조정식 · 최기상 · 임오경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혜택 대상이 되는 범위, 기간 및 제한 요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 및 토지를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 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범위를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에 신성 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 함(안 제130조).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1) 중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시설, 건축물 및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시설, 건축물 및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지 각 과세연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로 하다.

제130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및"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 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시투자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u>20</u>	<u>2023</u>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u>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u>
<u>연도</u> 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	도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속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u> </u>
액을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가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 업화를 위한 <u>시설로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 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 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 2)에 상당하는 금액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u>시설로서 대통</u>령 의한 <u>시설로서 대통</u>령 이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u>2024년 12월 31일</u>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

1)
시설, 건축물
및 토지로서 대통령령으
<u>로 정하는 것</u>
2)
시설, 건축물 <u>및</u>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u> 정하는 것</u>
<u>20</u>
30년 12월 31일

분의 25)에 상당하는 금 액

나. (생 략)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
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
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
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 2) (생략)
-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 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나. (현행과 같음)
3
가2023년 1
<u>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u>
도부터 2030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u>각 과세연도</u>
<u>.</u>
1) • 2) (현행과 같음)
나 <u>2023년 1</u>
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부터 2030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② ~ ⑤ (생 략)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 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 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 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 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 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

<del>-</del>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u>다만</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 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 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 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 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 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u>다만</u>,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u>다만, 제24조제1항제2</u>
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
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
설에 투자하는 경우,
<u>.</u>
2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성장
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민